

2019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개요】	3
I. 기업지배구조 정책	4
1. 기업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	4
2. 기업 지배구조 특징	5
II. 주주	7
1. 주주의 권리	7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20
III. 이사회	23
1. 이사회 기능	23
2. 이사회 구성	28
3. 사외이사의 책임	37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41
5. 이사회 운영	42
6. 이사회 내 위원회.....	47
IV. 감사기구	50
1. 내부감사기구	50
2. 외부감사인.....	56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59

【개요】

- (1) 기업명 : 주식회사 한진칼
- (2) 작성 담당자 : (정) 경영관리팀 과장 정영규
(부) 경영관리팀 과장 신지웅
- (3) 작성 기준일 : 직전 사업년도 말일 (2019년 12월 31일)
- (4)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조원태 외 17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¹⁾	28.93%
		소액주주 지분율 ²⁾	33.08%
업종	비금융	주요 제품·서비스	지주사업 부동산 임대업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미해당
기업집단명	한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19년	2018년	2017년
연결 매출액	12,035	13,049	11,497
연결 영업이익	△39	1,088	1,153
연결 계속사업이익	△2,592	△104	2,347
연결 당기순이익	△2,592	△104	2,347
연결 자산총액	26,937	28,501	28,440
별도 자산총액	19,134	20,166	19,252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기준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보통주 기준

I. 기업지배구조 정책

1. 기업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 국가 및 사회 공동체 발전 기여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총원 6명 중 4명을 사외이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11명 중 8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작성 기준일 현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를 통해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실제 운영상에서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특정 영역 또는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각 금융/행정 전문가, 회계 전문가, 재무/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 이사회 부의 안전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조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여성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들이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통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 정보 및 해당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여 이사들이 심도 있는 논의 및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를 담아 지난 2019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헌장에는 당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 고객, 회사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이익 증진을 추구하겠다는 경영 목표와 철학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jinkal.co.kr>),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 기업 지배구조 특징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총원 6명 중 4명을 (전체 구성원 대비 67%) 사외이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11명 중 8명을 (전체 구성원 대비 73%)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2월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더욱 가속화 하고자 2020년 4월 이사회에서 김석동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신임 김석동 이사회 의장의 금융/행정 전문성 경험이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상 4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거버넌스위원회는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개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사항 및 주주가치·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보상위원회는 등기임원의 보수 관련 사항(체계·한도·집행)에 대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를 수행합니다.

이는 결의사항 중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도 있으나, 어떤 사안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감사위원회 이외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재결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 대표이사는 지배구조 개선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직을 각각 사임하였고, 이 결과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 전원이 각 위원회별 위원으로 선임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적극 발휘되어 기업가치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높은 전문성

당사의 사외이사는 금융/행정 전문가, 회계 전문가, 재무/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사전 검증 등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임 후에도 신입 사외이사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당사 및 당그룹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지원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전문가를 감사위원장으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무/금융/법조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각 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고려한 위원 선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을 사외이사로 하고, 이사회 의장은 모든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지 않으며, 감사위원장은 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지 않고, 각 사외이사는 2개 이내의 위원회를 담당하게 하는 등 각 위원의 전문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I.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당사는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8.01.01 ~ '20.05.29)

구분	제7기 정기주주총회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0년 03월 04일	2019년 03월 14일	2018년 03월 07일
소집공고일	2020년 03월 04일	2019년 03월 14일	2018년 03월 08일
주주총회 개최일	2020년 03월 27일 (금)	2019년 03월 29일 (금)	2018년 03월 23일 (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23일전	주총 15일전	좌동
개최장소 / 지역	한진빌딩 본관 대강당 / 서울 중구	좌동	좌동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미만 주주 : 전자공고	좌동	좌동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당사 영문 홈페이지 내 일시·장소 안내 및 Reference Material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좌동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6인 중 2인 출석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 인 포함)	6인 중 1인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감사위원 3인 중 1인 출석	감사 1인 중 1인 출석	좌동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주요주주의 대리인 6인, 개인주주 3인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발언,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 및 근거 설명 요청, 의사진행 발언	- 발언주주 : 개인주주 8인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발언,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 및 근거 설명 요청, 의사진행 발언	- 발언주주 : 개인주주 3인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직접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해당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제고하고자 2020년에는 당사 영문 홈페이지 내 일시·장소 안내 및 의결권 행사시 참고를 위한 Reference Material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일환으로 전년도 주주총회시 2주간 전 소집공고를 하던 것에서 금년도 주주총회시 3주간 전 소집공고를 하는 등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4주간 전)를 고려, 이를 더욱 앞당기는 등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주의 직간접 의결권 행사

제7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당사는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등 주요 경영활동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작성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투표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들께서 당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대신 당사가 위탁한 회사를 통해 수월하게 의결권 위임을 하실 수 있도록 제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권유 전문 대행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경우 (유)그레이스홀딩스 외 2인의 주주로부터 전자투표 실시를 요청받았으며, 이사회가 이를 심의한 결과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전자투표를 미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의 직간접 의결권 행사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7기 정기주주총회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0년 3월 13일, 20일, 26일, 27일	2019년 3월 22일, 28일, 29일	2018년 3월 23일, 29일, 30일
정기주주총회일	2020년 3월 27일 (금)	2019년 3월 29일 (금)	2018년 3월 23일 (금)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아니오	좌동	좌동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좌동	좌동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좌동	좌동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좌동	좌동

■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 홈페이지 (<http://www.hanjinkal.co.kr/kr/contentsid/745/index.do>)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45,668,651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 59,170,435주의 77.18%입니다. 제6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보통결의 8건, 특별결의 4건, 주주별 3%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보통결의 3건이었으며, 표결 결과 제2-4호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의 자격)'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제6기 주주총회			2019.03.29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 중 찬성 주식수 (비율,%) ② 중 반대·기권 주식수 (비율,%)

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보통	제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9,170,435	45,668,651		35,568,549 (77.88)	
							10,100,102 (22.12)	
	제1-2호	보통	제6기 현금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5,934,540 (78.68)
								9,734,111 (21.3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특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등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40조 일부, 부칙 제1조)	가결	상동	상동		45,580,138 (99.81)	
							88,513 (0.19)	
	제2-2호	특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29조, 제30조의2, 제40조 일부)	가결	상동	상동		45,547,839 (99.74)
								120,812 (0.26)
제2-3호	특별	제2-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일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가결	상동	상동		35,902,322 (78.61)	
							9,766,329 (21.39)	
제2-4호	특별	이사의 자격 (제31조의 2) (국민연금공단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2,224,368 (48.66)	
							23,444,283 (51.34)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보통	사외이사 주인기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5,679,414 (78.13)	
							9,989,237 (21.87)	
	제3-2호	보통	사외이사 신성환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5,350,580 (77.41)
								10,318,071 (22.59)

	제3-3호	보통	사외이사 주순식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6,775,559 (58.63)
							18,893,092 (41.37)
	제4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9,894,586 (65.46)
							15,774,065 (34.54)
제5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보통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주인기 선임의 건	가결	42,947,917	29,443,324	24,017,337 (81.57)
							5,425,987 (18.43)
	제5-2호	보통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신성환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3,688,677 (80.46)
							5,754,647 (19.54)
	제5-3호	보통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주순식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18,021,847 (61.21)
							11,421,477 (38.69)
제7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7-1호	보통	이사 보수 한도(50억원) 승인의 건	가결	59,170,435	45,668,651	31,497,304 (68.97)
							14,171,347 (31.03)
제8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8-1호	보통	감사 보수 한도(0.4억원)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6,052,563 (78.94)
							9,616,088 (21.06)

* 상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기주식(2018년말 기준 23주) 및 우선주(전기 배당 실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제5호 의안은 보통결의 사항이나 주주별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2) 제7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3월 27일 개최된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48,645,640주이며, 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 총 수 57,276,944주의 84.93%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 총 수 산정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509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에 대한 2020년 3월 24일자 결정에 따라 ㈜대호개발 외 2인이 보유한 주식 수 합계 4,852,000주 중 1,893,477주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3월 26일 ㈜대호개발 외 2인이 서울고등법원 2020라2038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제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총 29건으로 보통결의 16건, 특별결의 13건이었으며, 표결 결과 9건의 안건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20건의 안건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제7기 주주총회			2020.03.2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 중 찬성 주식수 (비율,%) ② 중 반대·기권 주식수 (비율,%)	
제1호 의안	보통	제7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7,276,944	48,645,640	48,645,640 (100.00)** -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보통	사외이사 김석동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429,980 (56.39) 21,215,660 (43.61)	
제2-2호	보통	사외이사 박영석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652,055 (56.84) 20,993,585 (43.16)	
제2-3호	보통	사외이사 임춘수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369,660 (56.26) 21,275,980 (43.74)	
제2-4호	보통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654,509 (56.85) 20,991,131 (43.15)	

제2-5호	보통	사외이사 이동명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041,413 (55.59)
						21,604,227 (44.41)
제2-6호	보통	사외이사 서윤석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2,981,384 (47.24)
						25,664,256 (52.76)
제2-7호	보통	사외이사 여은정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1,029,891 (43.23)
						27,615,749 (56.77)
제2-8호	보통	사외이사 이형석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1,025,553 (43.22)
						27,620,087 (56.78)
제2-9호	보통	사외이사 구분주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0,984,325 (43.14)
						27,661,315 (56.86)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보통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569,022 (56.67)
						21,076,618 (43.33)
제3-2호	보통	사내이사 하은용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703,713 (56.95)
						20,941,927 (43.05)
제3-3호	보통	사내이사 김신배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3,289,859 (47.88)
						25,355,781 (52.12)
제3-4호	보통	사내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1,045,571 (43.26)
						27,600,069 (56.74)

제4호 의안	보통	기타비상무이사 함철호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1,340,132 (43.87)
						27,305,508 (56.13)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48,645,640 (100.00)**
						-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6-1호	특별	이사회 구성과 소집 관련 (제37조)	부결	상동	상동	25,186,831 (51.78)
						23,458,809 (48.22)
제6-2호	특별	위원회 관련 (제40조)	부결	상동	상동	25,119,669 (51.64)
						23,525,971 (48.36)
제6-3호	특별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부결	상동	상동	25,121,696 (51.64)
						23,523,944 (48.36)
제7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제7-1호	특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제25조의2)	부결	상동	상동	23,442,563 (48.19)
						25,203,077 (51.81)
제7-2호	특별	이사의 선임 관련 (제30조)	부결	상동	상동	23,406,369 (48.12)
						25,239,271 (51.88)
제7-3호	특별	이사의 자격,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관련 (제30조의2, 제30조의3)	부결	상동	상동	23,056,814 (47.40)
						25,588,826 (52.60)
제7-4호	특별	이사의 직무 관련 (제35조)	부결	상동	상동	23,072,812 (47.43)
						25,572,828 (52.57)

제7-5호	특별	이사의 의무 관련 (제34조의2)	부결	상동	상동	23,406,434 (48.12)
						25,269,206 (51.88)
제7-6호	특별	이사회 구성, 권한 및 소집, 이사회 의장 관련 (제37조, 제37조의3)	부결	상동	상동	23,211,489 (47.72)
						25,434,151 (52.28)
제7-7호	특별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관련 (제37조의2)	부결	상동	상동	23,253,364 (47.80)
						25,392,276 (52.20)
제7-8호	특별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관련 (제40조, 제40조의2)	부결	상동	상동	23,281,679 (47.86)
						25,363,961 (52.14)
제7-9호	특별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제41조)	부결	상동	상동	23,406,136 (48.12)
						25,239,504 (51.88)
제7-10호	특별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부결	상동	상동	22,955,301 (47.19)
						25,690,339 (52.81)

* 상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기주식(2019년말 기준 37주), 우선주(전기 배당 실시) 및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509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사건에 대한 2020년 3월 24일자 결정에 따른 1,893,477주)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주주들의 동의 의사를 박수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전자투표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미 실시 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45,668,651주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시 48,645,640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전날까지 마쳐야 하므로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들의 원활한 의안 심의 및 수정 동의 발생시 제약이 따르는 점, 전자투표한 주주가 현장 출석하여 의결권을 중복 행사시 유효한 의결권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 당사 주주총회 운영 현실을 감안, 주주들이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하는 가운데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 542 조의 6 에 따라, 6 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전년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안하여 주시면, 당사는 상법 및 그 시행령 또는 정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주제안이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통해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이사회가 승인한 주주제안에 대해 주주총회 당일에는 이를 제안하신 주주에게 제반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주권리를 충실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최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 당시에는 (유)그레이스홀딩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1건씩 총 2건의 주주제안이 있었으며, 2020년 개최된 제7기 정기주주총회시에는 (유)그레이스홀딩스 외 2인이 공동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8.01.01 ~ '20.05.29)

제안일자	제안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2019.01.31	(유)그레이스홀딩스	감사 1인 선임의 건 등 총 6개 안건 제안	법원은 상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인 6개월 주식 보유 요건을 필수 요건으로 판단, 소수주주권 행사 효력 없음 (2019라20280, 2019.03.21), 이에 따라 제안주체의 주주제안 안건 삭제	-	-	-
2019.02.07	국민연금공단	정관 일부 변경 제안 (이사의 자격 관련)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2019.03.14)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안건 부결 (2019.03.29)	부결	48.66	51.34

2020.02.13	(유)그레이스 홀딩스 외 2인	사외이사 서윤석 선임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2020.03.04) 당사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안건 부결 (2020.03.27)	부결	47.24	52.76
		사외이사 여은정 선임		부결	43.23	56.77
		사외이사 이형석 선임		부결	43.22	56.78
		사외이사 구본주 선임		부결	43.14	56.86
		사내이사 김신배 선임		부결	47.88	52.12
		사내이사 배경태 선임		부결	43.26	56.74
		기타비상무이사 함철호 선임		부결	43.87	56.1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8.19	51.81
		이사의 선임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8.12	51.88
		이사의 자격,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40	52.60
		이사의 직무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43	52.57
		이사의 의무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8.12	51.88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소집, 이사회의 의장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72	52.28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80	52.20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86	52.14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8.12	51.88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19	52.81

* 반대율 각 란에는 반대와 기권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을 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제안권을 적법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는 2018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주주환원 관련, 2019년 2월 공정공시를 통해 주주 이익환원 및 주주중시 경영의 일환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8 사업연도 결산 배당성향을 약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배당 계획과 중장기적으로 현금유보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예정임을 공시하였고, 2019년 3월 보통주 1주당 300원, 우선주 1주당 325원을 현금배당하는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주주환원 관련, 2020년 3월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에 대한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50% 내외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보통주 1주당 255원, 우선주 1주당 280원을 현금배당하는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주주환원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주주환원계획 또는 주주환원정책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공시, 보도자료 제공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안정적인 배당 수준을 유지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시 현금배당 지급 및 확정 재무제표 승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의 경우 해당 안건의 이사회 결의에 추가하여 주주 권리 등을 고려,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위임, 승인을 통해 확정하였고, 주주총회 후 1개월 내에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모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기준	개별기준
2019	12	보통주	미해당	255	15,088,457,355	0.6	-6.3	47.5
		종류주	미해당	280	148,483,160	0.6		
2018	12	보통주	미해당	300	17,751,130,500	0.9	-53.5	47.3
		종류주	미해당	325	172,346,525	1.4		
2017	12	보통주	미해당	125	7,396,305,125	0.7	3.3	3.1
		종류주	미해당	150	79,544,550	1.3		

* 시가 배당률은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배당성향(연결기준) = 총 배당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 배당성향(개별기준) = 총 배당금 / 연결 당기순이익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 등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주식발행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발행가능주식수	발행주식수	비고	
보통주	235,000,000	59,170,458	-	
종류주	우선주	15,000,000	536,766	-

당사 우선주는 설립 시 발행되었고 의결권이 없으며,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배당으로 더 배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2019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주식의 의결권은 상법 제369조(의결권)에 따라 1주마다 1개로 하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보고서 제출일 기준 39주)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IR 내역

당사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실적 자료를 DART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말 이후 실적 발표일 전까지는 IR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R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락처를 공시 내 기재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는 경우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 중 IR 미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0.05.29)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19.03.19~ 19.03.28	기관투자자	IR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 2018년 사업년도 배당 계획	
19.04.16	기관투자자	실사	회사채 발행 관련 대표주간사 실사	2회 회사채
19.06.25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9.06.27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9.07.02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9.12.12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20.02.07~ 20.03.26	기관투자자	IR / 컨퍼런스콜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 내용 및 향후 경영발전 방안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사이트(<http://www.hanjinkal.co.kr/en/main/index.do>)를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는 국내 주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문공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중요 IR 사항에 대해서는 위 영문 사이트 내 IR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 중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0.05.29)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19.02.13	장래사업·경영계획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2018년 사업년도 배당 계획
20.02.07	장래사업·경영계획	자회사 일부 자산 매각 계획 및 한진칼 지배구조 개선 추진
	영업(잠정)실적	2019 사업년도 연간 잠정 재무실적 (별도 기준)
20.03.04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 안내

한편,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규정 내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등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의 목적으로 2019년 3월 제6기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변경을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및 규정 제정,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내부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심의 의결권을 가지며, 자료제출 요구권, 내부거래 시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11월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사항 및 주주가치·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을 받아 심의를 수행합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2019년 12월 당사 자회사인 (주)한진의 자사주 취득, (주)대한항공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연장, 계열회사와의 2019년도 거래총액한도 변경 및 2020년도 거래총액한도에 대해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2019년 연간 기준 최대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내용은 2020년 3월 제7기 정기주주총회시 대표이사가 참석 주주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브랜드사용료	대한항공 (계열회사)	2019년 1월 ~ 2019년 12월	288	46.6%
부동산임대	대한항공 (계열회사)	2019년 1월 ~ 2019년 12월	42	6.8%
파견직원용역비	대한항공 (계열회사)	2019년 1월 ~ 2019년 12월	7	1.2%
사무실 임차	정석기업 (계열회사)	2019년 1월 ~ 2019년 12월	7	1.1%
투자주식 매수	(주)한진 (계열회사)	2019년 12월	52	8.4%

* 2018년 영업수익(별도 기준)에 대한 비율입니다.

**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은 제외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한항공 (계열회사)	브랜드 수수료 외	2019년 1월 ~ 2019년 12월	341	55.2%
(주)한진 (계열회사)	주식 취득 외	2019년 1월 ~ 2019년 12월	57	9.3%

* 2018년 영업수익(별도 기준)에 대한 비율입니다.

**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은 제외하였습니다.

Ⅲ.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및 자회사의 중장기 전략계획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 내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 규정 제9조)

①-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정관의 변경
-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이사의 업무 감독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이사의 보수 (단,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보상위원회에 그 의결 권한을 위임한다)
- 주식의 소각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①-2. 경영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 규정 제9조)

- 회사 및 자회사의 중장기 전략계획 승인
- 자회사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및 변경
-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및 지출
- 50억원 이상의 구매 업체 변경 및 신규업체 선정
- 1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소유주식 매각
- 5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계획 처분 결정
-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 대외공시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사항

①-3.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양도제한주식의 양도 승인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결정
- 주식 유·무상 증자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 200억원 이상의 당좌차월 약정 및 Credit Line 신규 약정
- 200억원 이상의 신규 차입(CP 발행 포함) 계약
- 200억원 이상의 기존 차입(CP, 당좌차월, Credit Line)의 1년 이상 만기 연장
- 200억원 이상의 채무보증
- 기말 회계결산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중요 정책 변경

①-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 이사회 소집권자의 지정

② 기타 법령, 정관,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③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④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⑤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지주회사이므로 그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에 '자회사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및 변경'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며, 경영에 관한 사항 일부 및 재무에 관한 사항 일부에 대해 법령상 의무화된 사항보다 강화된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설 및 시설외 투자, 유형자산 취득, 타법인 출자, 차입 및 채무보증 관련하여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여 사내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심의·의결을 정관에 따라 위임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에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 및 경영진 보상 제도·집행에 관한 심의·의결을 이사회 규정에 따라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을 근거로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그룹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이 일환으로 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군 양성을 위하여 임원 승진 후 '임원경영능력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양성된 후보군에 대해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하여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해당 후보자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됩니다. 최종적으로 상법 제389조,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사는 비록 명시적 승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승계가 진행됩니다. 먼저, 정관 제19조 및 제35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유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사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를 2인 이상으로, 사내이사(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자를 포함)를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고 상황 발생시 임시 이사회 개최 및 대표이사 선임 심의를 즉시 추진하여 리더십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당사 경영관리팀이 상세 운영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리스크 관리 정책

당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로 내부 감사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부 감사기구는 감사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진행하며, 매 분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및 조치 현황 등을 보고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내부 통제 정책' 두번째 문단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 통제 정책

첫째로,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 및 해당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에 결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근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인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내부 감사기구에 위임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영 현황을 내부 감사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연중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매 사업연도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내부 감사기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개정 (2018년 11월 시행) 및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당사 별도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사는 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회계투명성 및 부정 예방 등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019년 중 고도화 하였습니다. 고도화에 따른 정비 사항 및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 시행, 2019년도 내부회계 평가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내 관련 사항도 함께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본 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동 조직은 사내 각

유관부서에서 통제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수립된 통제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내부 감사 부서인 감사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사내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각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이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전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시 제출 기관별로 업무를 담당, 총괄하는 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관리팀 내 2명의 인원을 공시 담당자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시 운영 절차 확립 및 내부 정보 관리,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2019년 9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운영에 따라 당사는 공시 통제 조직별 권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시 통제 활동, 공시 위험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금지, 공정공시 관련 사항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기준으로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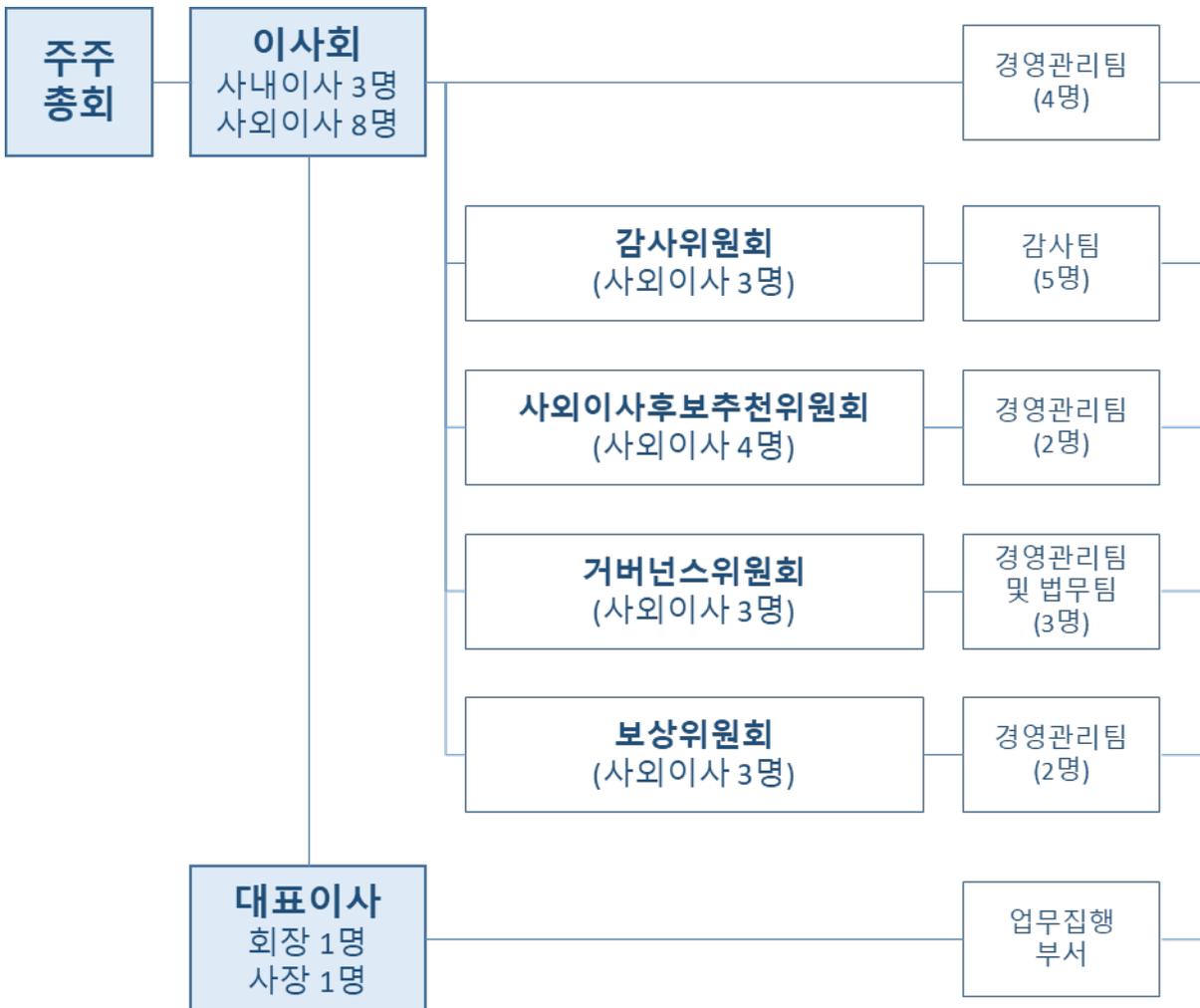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이사회 관련 조직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구성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조원태	남	대표이사 회장	2014.03.21	2023.03.26	기업경영 일반	- (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석태수	남	대표이사 사장	2013.08.01	2022.03.28	기업경영 일반	- (현) 한진물류연구원 원장 - (주)한진 대표이사 사장
	하은용	남	CFO 부사장	2020.03.27	2023.03.26	재무/전략	- (현) 대한항공 CFO 부사장 - 대한항공 재무본부장
사외 이사	김석동	남	이사회 의장	2020.03.27	2023.03.26	금융/행정	- (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 -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인기	남	감사위원장	2019.03.29	2022.03.28	회계(교수)	- (현)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 (현)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신성환	남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19.03.29	2022.03.28	재무(교수)	- (현)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주순식	남	감사위원회 위원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2019.03.29	2022.03.28	공정거래	- (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석	남	보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0.03.27	2023.03.26	재무/금융 (교수)	- (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 (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임춘수	남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2020.03.27	2023.03.26	재무/금융 (회계사)	- (현) 마이다스PE 대표 - 한국투자증권 GIS그룹장 부사장
	최윤희	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2020.03.27	2023.03.26	법조(교수)	- (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이동명	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2020.03.27	2023.03.26	법조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장
--	-----	---	-------------------------------	------------	------------	-------------	--------------------------------------

* 당사 정관 제31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에 이르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총 3인) (A)	위원장	사외이사	주인기	남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 승인 등
	위원	사외이사	신성환	남	B	
	위원	사외이사	주순식	남	C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4인) (B)	위원장	사외이사	신성환	남	A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과 경력 및 역할 수행 정도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위원	사외이사	박영석	남	D	
	위원	사외이사	최윤희	여	C	
	위원	사외이사	이동명	남	D	
거버넌스 위원회 (총 3인) (C)	위원장	사외이사	주순식	남	A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검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를 심의·의결
	위원	사외이사	최윤희	여	B	
	위원	사외이사	임춘수	남	D	
보상위원회 (총 3인) (D)	위원장	사외이사	박영석	남	B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 보상 체계 등을 결의 경영진 보상제도 및 보상집행에 관한 사항 검토
	위원	사외이사	임춘수	남	C	
	위원	사외이사	이동명	남	B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사를 3인 이상,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2019년말 4인에서 2020년 3월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1인이 퇴임, 5인이 신규 선임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66.7%에서 72.7%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원은 2019년, 2020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로 선임되었으며, 연임 중인 인원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취지의 이사회 규정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해당 규정에 따라 김석동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전체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 전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2019년 11월 제정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이사회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전문 분야를 2019년 회계, 재무, 공정거래, 법조 분야에서 금융, 행정 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가치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교수, 전문 자격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직 경험 유경험자 등 고른 구성을 도모하는 한편, 2020년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를 1인 선임하였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기업경영 일반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 이사회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경력 등을 검증하고 법조계, 학계 등 출신 계 및 전문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합니다.

■ 이사회 구성원별 전문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 11명 각각에 대한 전문성 등 선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전문성 등에 대한 설명
사내 이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한진칼 대표이사로 IT, 자재, 여객, 화물, 경영전략, 기획 등 대한항공 핵심 부서 근무 경험을 축적한 항공 물류 전문가이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최고정책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019년 서울 IATA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임. 또한, 2018년 5월에는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의 성공적인 출범을 이끌어 냄. 한편, 그룹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재무구조를 개선 등 그룹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석태수	그룹 내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으로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 본부장 및 (주)한진의 대표이사 등 당사 핵심 자회사들의 주요 직책을 역임한 바 있음. 또한, 그룹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및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룹을 발전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됨
	하은용	대한항공 재무본부, 해외영업지점, 경영기획실, 항공우주사업본부, 운항본부 및 (주)한진의 재무담당, 한진정보통신 감사 등 한진그룹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재무/전략 전문가로 불확실한 대외환경 하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신속히 판단하고 적시에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그룹내 사업조정 검토 및 효율적인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사외이사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오랜 기간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한 경제, 금융, 행정 전문가로 전문적인 경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 및 그룹의 재무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폭넓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금융, 행정 분야에서의 균형 잡힌 경력을 토대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주주관점에서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주인기	한국인 최초로 전 세계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회계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회장에 취임한 분으로, 회사가 국제회계감사 및 국제회계윤리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18년 '신외부감사법(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여 회사의 회계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성환	한국 금융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로 정부 정책 수립, 학술 분야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사회가 독립된 상태에서 주주 대표성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는 신성환 사외이사의 평소 소신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당사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주순식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기업의 다양한 공정거래 위반 사항들을 처분한 바 있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전문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런 주순식 사외이사의 경험은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박영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재무/금융 전문가로, 유가/환율/금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자본시장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를 설립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활동 등 경영 투명성 개선 활동을 한 경험을 통해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판단됨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의 대표이며, 골드만삭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대형 IB(투자은행)에서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Capital Market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국제적 금융감각을 통해 국내외 기관 투자자, 연기금, 일반주주 등 다양한 주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주권익 보호에 힘쓸 것으로 판단됨
최윤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한 유능한 법률전문가임. 특히, 15년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임하였고, 한국씨티은행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여 회사의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이사회에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이동명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등 법조계 공직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처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임. 30년 가까운 판사 생활과 10년 가까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통찰력을 토대로 이사회에의 법률적 의사결정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작성대상기간 중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8.01.01 ~ '20.05.29, 최초선임일順)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재직여부
사내이사	석태수	2013.08.01	2022.03.28	2019.03.29	재선임	재직
	조양호	2014.03.21	2019.04.07	2019.04.07	사임	퇴직
	조원태	2014.03.21	2023.03.26	2020.03.27	재선임	재직
	하은용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사외이사	조현덕	2013.08.01	2019.03.29	2019.03.29	임기만료	퇴직
	김종준	2016.03.18	2019.03.29	2019.03.29	임기만료	퇴직
	이석우	2017.03.24	2020.03.27	2020.03.27	임기만료	퇴직
	주인기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재직
	신성환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재직
	주순식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재직
	김석동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박영석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임춘수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최윤희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이동명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이사로 구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서 기준일 및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추천되고 있으며,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 결의를 통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4인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개최된 제7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이사 후보자 전원은 (당시 사외이사 후보자 9인, 사내이사 후보자 4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1인) 2020년 3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후보자 검토 및 추천 결의를 각각 필요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 중에서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출신지역, 종교, 전문분야 등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당일에 주주총회 개최 정보와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 중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0.05.29)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구분	성명	
2019.03.14 (주총 15일전)	2019.03.29	사내	석태수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사외	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2020.03.04 (주총 23일전)	2020.03.27	사내	조원태	1. 후보자의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하은용	
			김신배	
			배경태	

		사외	김석동	2. 후보자의 주된직업, 현직 포함 주요 경력 및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5. 사외이사후보자가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 및 직위
			박영석	
			임춘수	
			최윤희	
			이동명	
			서윤석	
			여은정	
			이형석	
			구분주	
		비상무	함철호	

2019년 3월 개최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법상 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제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행사 효력을 판단하는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2020년 3월 개최된 제7기 정기주주총회시 당사는 전년 대비 약 1주일 앞선 약 3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고,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위에 기재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사내이사를 포함,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활동 내역, 참석률 등의 정보를 매 분기 공시를 통해 제공할 뿐 아니라 당사의 홈페이지 내 이사회 활동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도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2019년 및 2020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상정, 개별 표결 방식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사 후보의 선임이 가능하므로 적법한 주주제안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그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조원태	남	회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석태수	남	사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하은용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재무총괄 (CFO)
김석동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이사회 의장
주인기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장
신성환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주순식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박영석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보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임춘수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최윤희	여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이동명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조에밀리리	여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마케팅총괄 (CMO)
Gaudreau Michel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안전팀장
이성환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관리팀장, 재무컨트롤팀장
이준구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팀장

당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와 당사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 정관 제30조의2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통한 확인 사항을 기초로 외부 인물 정보, 검색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 검증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최종 확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요건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 한 적이 없으며,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가 직접 내지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당사·계열회사가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해당 해사와 당사·계열회사간 법률자문 서비스 거래가 있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 한 내용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 계열회사	당사	당사 계열회사	당사	당사 계열회사
김석동	-	-	-	-	-	-
주인기	-	-	-	-	-	-
신성환	-	-	-	-	-	-

주순식	-	-	-	-	사외이사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유)울촌은 당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2019년 한 해 자문수수료 2천만원을 지급 받음 (2017, 2018년은 거래 없음)	사외이사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유)울촌은 당사 계열사와 (2017년 4개사, 2018~2019년 5개사) 각각 자문계약을 맺고 2017년 합계 약 14.9억원, 2018년 합계 약 23.8억원, 2019년 합계 약 18.3억원의 자문수수료를 지급 받음
박영석	-	-	-	-	-	-
임춘수	-	-	-	-	-	-
최윤희	-	-	-	-	-	-
이동명	-	-	-	-	-	-

* 거래내역은 최근 3개 사업연도 (2017~2019년) 기준이며, 약관에 따른 거래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 주순식 사외이사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유)울촌과 계약내역이 있으나, 사외이사 본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약입니다.

앞으로도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에 대해 면밀히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한편, 선임된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간에 이해관계 형성으로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년 초과 당사에 장기 재직하거나 계열회사를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시 그 사유
김석동	2개월	-	2개월	-
주인기	1년 2개월	-	1년 2개월	-
신성환	1년 2개월	-	1년 2개월	-
주순식	1년 2개월	-	1년 2개월	-
박영석	2개월	-	2개월	-
임춘수	2개월	-	2개월	-
최윤희	2개월	-	2개월	-
이동명	2개월	-	2개월	-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고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현직	겸직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김석동	2020.03.27	2023.03.26	법무법인 지평 고문	SK텔레콤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9.03.26~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주인기 (감사위원)	2019.03.29	2022.03.28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사)사회 연대은행	이사	2016.02.23~ 현재	-
신성환 (감사위원)	2019.03.29	2022.03.28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	-
주순식 (감사위원)	2019.03.29	2022.03.28	법무법인 울촌 고문	-	-	-	-
박영석	2020.03.27	2023.03.26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SKC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9.03.28~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임춘수	2020.03.27	2023.03.26	마이다스PE 대표	-	-	-	-
최윤희	2020.03.27	2023.03.2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이동명	2020.03.27	2023.03.26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동양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6.12.02~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자, 2019년 11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 내지는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정보, 자원의 제공을 뒷받침하고자 당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외이사에 대해 그룹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수시로 설명하고 사외이사의 제안 사항에 대해 회사가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쌍방향 소통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로만 참석자로 구성된 회의 개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정기/ 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 /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1차	정기	2020.03.03	3 / 8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2020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2차	임시	2020.05.13	3 / 8	- (주)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 (주)한진관광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2020년 제1차 거버넌스위원회
			3 / 8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년 이사 보수 집행 사전 검토의 건	2020년 제2차 보상위원회
3차	임시	2020.05.25	3 / 8	- 국책은행의 (주)대한항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약정 체결(안) 사전 검토의 건	2020년 제2차 거버넌스위원회

* 비공식 회의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정책상 현재 외부평가 등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상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참석률, 제언의 실효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 조직을 통한 사외이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외이사 활동 지원 개선,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기본 급여,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매수 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상 수준은 관련 법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보수액 등을 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항목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11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0 사업년도부터 이사 보수 집행에 대한 보상위원회 사전 검토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이사회 개최 1일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목적의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동 조항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 기간 중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0.05.29)

년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	안건 통지일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019	1차	결의	2018년(제6기)회계결산(안)	가결	정기	01.29	01.16	5/6
		결의	준법통제기준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결의	2019년 1분기 만기도래 주식담보대출 운영(안)	가결				
		결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가결				
		보고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				
		보고	2019년 한진칼 사업계획 보고	보고				

2차	결의	회사채 발행의 건	가결	임시	03.14	03.12	4/6
	결의	제6기 현금배당(안)	가결				
	결의	제6기 확정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주주제안 검토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의 건	가결				
	결의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3차	결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04.01	03.29	6/7
4차	결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04.24	04.22	5/6
5차	결의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정기	05.08	04.29	6/6
	결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의 건	가결				
	결의	계열회사와의 거래총액한도 승인의 건	가결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결과 보고	보고				
	보고	제7기 1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6차	결의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 및 차환의 건	가결	정기	08.08	07.19	6/6
	결의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가결				
	보고	제7기 반기 회계결산(안)	보고				
7차	결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후속조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11.08	11.07	6/6
	보고	제7기 3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8차	결의	대규모 내부거래 (㈜한진 자사주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임시	12.20	12.06	6/6
	결의	(주)대한항공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연장 승인의 건	가결				
	결의	계열회사와의 거래총액한도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0년 한진칼 사업계획(안)	보고				

2020	1차	결의	제7기 회계결산(안) 승인의 건	가결	정기	02.07	02.03	6/6
		결의	주식담보대출 운영(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 결과 보고	보고				
		보고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차	결의	제7기 현금배당(안) 승인의 건	가결	임시	03.04	03.02	6/6
		결의	제7기 확정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주주제안 검토의 건	가결				
		결의	전자투표 실시 여부 검토의 건	가결				
		결의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총회 목적사항 포함)	가결				
		보고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보고				
	3차	결의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임시	04.02	03.31	11/11
		결의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보고	당사의 의결권 권유 활동에 대한 KCGI의 고발 관련 경과 보고	보고				
	4차	결의	(주)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정기	05.14	05.12	9/11
		결의	(주)한진관광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결의	2020년도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0년도 1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보고				
	5차	결의	단기차입금 조달(안) 승인의 건	가결	임시	05.25	05.21	9/11
		결의	국책은행의 (주)대한항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약정 체결(안) 승인의 건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 및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의사록에는 필요시 개별 이사의 의견을 기록하고,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별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은 분기별로 정기

공시합니다.

작성 대상 기간 중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19.12.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개최일자	01.29	03.04	04.01	04.24	05.08	08.08	11.08	12.20
사내	조양호	불참	불참	불참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조원태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석태수	출석							
사외	조현덕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김종준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이석우	출석							
	주인기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신성환	미해당	미해당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순식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작성대상기간 : '20.01.01 ~ '20.05.29)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개최일자	02.07	03.14	04.02	05.14	05.25
사내	조원태	출석	출석	출석	불참 ¹⁾	불참 ²⁾
	석태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하은용	미해당	미해당	출석	불참 ¹⁾	불참 ²⁾
사외	이석우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주인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신성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순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석동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박영석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임춘수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최윤희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이동명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 1) 조원태 대표이사는 심의 제1호 의안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관련 특별한 이해관계로, 하은용 사내이사는 동일 의안 관련 이해상충 관계 우려에 따라 이사회에 불참하였습니다.
- 2) 조원태 대표이사는 심의 제2호 의안 (국책은행의 ☞대한항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약정 체결(안) 승인의 건) 관련 특별한 이해관계로, 하은용 사내이사는 동일 의안 관련 이해상충 관계 우려에 따라 이사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토의내용 등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조양호	사내	2014.03.21 ~ 2019.04.07	38.9%	0%	50.0%	66.7%	100%	100%	100%	100%
조원태	사내	2014.03.21 ~ 현재	84.7%	87.5%	100%	66.7%	100%	100%	100%	100%
석태수	사내	2013.08.01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허정권	사내	2016.03.18 ~ 2017.03.07	100%	-	-	100%	100%	-	-	100%
조현덕	사외	2013.08.01 ~ 2019.03.29	94.4%	100%	83.3%	100%	100%	100%	100%	100%
김종준	사외	2016.03.18 ~ 2019.03.29	96.3%	100%	100%	88.9%	100%	100%	100%	100%
이석우	사외	2017.03.24 ~ 2020.03.2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인기	사외	2019.03.29 ~ 현재	100%	100%	-	-	100%	100%	-	-
신성환	사외	2019.03.29 ~ 현재	83.3%	83.3%	-	-	100%	100%	-	-
주순식	사외	2019.03.29 ~ 현재	100%	100%	-	-	100%	100%	-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보상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제외한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관련 사항은 각 위원회별 운영 규정을 두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다음 장 IV. 감사기구 내용 참조)를 제외한 위원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공시 작성 대상 기간 중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0.05.29)

년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19	1차	03.14	4/5	결의사항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0	1차	03.03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사항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 신성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	2018	2017
사외	조현덕	100%	100%	-	-
	김종준	100%	100%	-	-
	이석우	100%	100%	-	-
사내	조양호	0%	0%	-	-
	석태수	100%	100%	-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원회 설치 이전인 년도는 "-"으로 표시

■ 거버넌스위원회 (舊내부거래위원회 포함)

공시 작성 대상 기간 중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0.05.29)

년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19	1차	05.08	4/4	결의사항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가결*
	2차	12.20	4/4	결의사항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논의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한진 자사주 취득) 사전 검토의 건	논의
				논의사항	㈜대한항공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연장 사전 검토의 건	논의
논의사항	계열회사와의 거래총액한도 사전 검토의 건	논의				
2020	1차	05.13	3/3	논의사항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논의
				논의사항	㈜한진관광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논의
	2차	05.25	3/3	논의사항	국책은행의 (주)대한항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약정 체결(안) 사전 검토의 건	논의

* 주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	2018	2017
사외	이석우	100%	100%	-	-
	신성환	100%	100%	-	-
	주순식	100%	100%	-	-
사내	석태수	100%	100%	-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원회 설치 이전인 년도는 "-"으로 표시

■ 보상위원회

공시 작성 대상 기간 중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0.05.29)

년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	1차	03.03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논의사항	'20년 이사 보수한도 사전 검토의 건	논의
	2차	05.13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논의사항	'20년 이사 보수 집행 사전 검토의 건	논의

* 신성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 박영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보상위원회는 2020.03.03에 최초로 개최되었으므로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기재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내부감사기구 구성

당사는 2018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게 되어,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개최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주인기	회계사 및 회계·재무 학위보유자 - 한국공인회계사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 회장) - 뉴욕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학 박사 -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및 명예교수 ('81년~)
위원	사외이사	신성환	회계·재무 학위보유자 및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MIT 경영학 석사/박사 (재무관리)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95년~) - 키움증권 감사위원 ('13~'14년) - 기금운용평가단 단장 ('14~'15년) - KB금융 사외이사 ('14~'15년)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15~'18년)
위원	사외이사	주순식	공정거래 전문가 - 대한전선(주) 감사위원 ('15~'20년)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정원은 3명이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2인의 회계·재무 전문가 및 1인의 공정거래 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 내부감사기구 운영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의 규율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9년 5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규정 내 정의된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p>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p> <p>(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권 (2)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주주총회 보고 의무</p> <p>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p> <p>(1) 이사회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제출 의무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5)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p> <p>3. 감사에 관한 사항</p> <p>(1) 회사의 업무·재산 감사권 (2) 상법 제342조의2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이사의 보고 수령권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권한 (6)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에 대한 승인권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수령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0) 회사의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전년도 감사 실적을 보고받을 권한 (1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의무 (1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시 사전 검토 및 승인권</p> <p>4.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p>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지침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년 1회 내부통제 변화 사항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외부감사인 등은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42조 제9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2019.04.18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전원	한진그룹 소개 등	약 1시간
2019.05.08	한영회계법인	전원	2019년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제' 안내 등	약 1시간
2019.08.08	한영회계법인	전원	주요 회계 이슈 사항 (핵심 감사 사항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중간/기말 감사 계획 등	약 1시간
2019.11.08	한영회계법인	전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약 1시간
2020.05.13	삼일회계법인	전원	2020년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 소개	약 1시간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 현안 및 중요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이 감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동안 임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하였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은 공인회계사 및 내부감사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팀	5	부장 1명, 차장 3명, 과장 1명 (평균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 (법률 근거 분석 등) 및 연간 계획 수립 • 안건 관련 자료 제작 및 사전 송부 (기타 질의/논의 사항에 대한 대응) • 감사위원회 진행 지원 및 의사록 작성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내부 평가 등

당사 감사팀은 대표이사 산하 조직 편제이나, 조직 및 자회사 업무에 대한 정기, 수시, 특별감사 등의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위원회 개최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감사팀 및 당사 임직원에게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규정을 통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은 사외이사와 동일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대한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 등을 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항목을 통해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11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0 사업년도부터 이사(감사위원) 보수 집행에 대한 보상위원회 사전 검토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8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별 이사 출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년도	회차	개최 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19	1차	04.18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¹⁾
				보고사항	감사위원회 규정(안) 보고	-
	2차	05.08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의 건	가결
				보고사항	제7기 1분기 회계결산(안)	-
3차	08.08	3/3	보고사항	제7기 반기 회계결산(안) 보고	-	

1) 주인기 감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4차	08.30	3/3	결의사항	회사의 전·현직 이사에 대한 소제기 여부 결정의 건	부결 ²⁾
	5차	11.08	3/3	결의사항	감사인 선임 기준 제정(안)	가결 ³⁾
				보고사항	FY2020·2022 외부감사인 지정 통보 보고	-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경과 보고	-
보고사항	제7기 3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				
2020	1차	02.06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가결
				결의사항	19년 업무점검 결과 보고 및 20년 정기 업무점검 계획(안) 승인	가결
				보고사항	제7기 회계결산(안) 및 영업보고서(안) 보고	-
				보고사항	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차	03.03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의견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주주총회 부의의안 조사의견 승인	가결
				결의사항	감사위원장 직무 대행자 선정	가결 ⁴⁾
	3차	05.13	3/3	결의사항	FY2020 세무조정 용역 계약 체결 승인	가결
				보고사항	제8기 1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
				보고사항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2) 회사의 전·현직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함

3) 감사보수 기준을 수정(2억원 → 1.6억원)하여 가결함

4) 위원장 유고시 신성한 감사위원, 주순식 감사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가결함

당사는 2017, 2018, 2019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을 지정 감사인으로 통보받았으며, 2020, 2021, 2022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따라 2018, 2019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거짓 기재 및 누락 여부 및 시정 계획이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이사회 보고일	평가 결과
2018 사업년도	2019년 01월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중
2019 사업년도	2020년 03월 0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중

■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구분	년도	2019					2020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1차	2차	3차
	개최일자	04.18	05.08	08.08	08.30	11.08	02.06	03.03	05.13
사외	주인기	출석							
	신성환	출석							
	주순식	출석							

■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	2018	2017
사외	주인기	100%	100%	-	-
	신성환	100%	100%	-	-
	주순식	100%	100%	-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원회 설치 이전인 년도는 "-"으로 표시

당사의 감사 절차는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 종류 및 방법 결정, 감사 계획 수립, 감사 실시, 감사 강평회, 감사결과 보고, 감사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감사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감사의 실시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서명 확인한 감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확인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해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4월에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2017, 2018, 2019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고,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의해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동일 감사인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 법에 따라 2019년 11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인 선임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여 동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해 증권선물위원회가 2020, 2021, 2022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고 받았으며 외부감사인 중 매니저 직급 이상을 가진 직원과 대면 및 서면 회의를 통해 감사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 감사 위험, 내부통제 미비점, 부정 및 법규 위반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 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6회(2019년 5월, 8월, 11월, 2020년 2월, 3월, 5월)에 걸쳐 경영진 참석 없는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회사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 사항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회차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19	1	05.08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대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검토 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및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검토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기타 재무보고절차 감시 측면에서의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2	08.08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대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검토 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및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검토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기타 재무보고절차 감시 측면에서의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3	11.08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대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분기 검토 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및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검토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기타 재무보고절차 감시 측면에서의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2020	1	02.06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대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감사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2	03.03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서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말 감사 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및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에서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감사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기타 재무보고절차 감시 측면에서의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3	05.13	감사위원회,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팀 구성 및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논의 •1분기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3항(감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과 협의 과정에서 내부감사업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 수령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2018 사업연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기한 : 2019년 2월 14일) 이전인 2019년 1월 21일, 연결기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기한 : 2020년 2월 28일) 이전인 2019년 2월 20일에 각각 제출하였으며, 2019 사업연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기한 : 2020년 2월 13일) 이전인 2020년 1월 23일, 연결기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기한 : 2020년 2월 27일) 이전인 2020년 2월 7일에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18년→‘19년)
		○	X		
주주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주주총회 개최 3주 이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전자투표를 미실시하기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종속회사 포함 연결결산 등 주요 경영활동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배당정책은 2019년 2월, 배당실시 계획은 2019년 3월 각각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	X → ○
이사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후보집단 구성·선정 기준, 교육, 평가 등 이행 중 (명시적인 승계정책 부존재)	○ → X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리스크 관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규정), 준법경영 (준법지원인,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 (공시책임자,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모든 정책 운영 중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와 구별하여 김석동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중	X → ○
	집중투표제 채택		√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미적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정책 수립 및 운영 중	X → ○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없음	

감사 기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		2019년 총 4회 실시 (4월, 5월, 8월, 11월)	X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감사 업무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위해 전담 지원조직인 감사팀을 별도 운영 중, 단, 감사팀의 인사 사항은 CEO 전결사항임 (감사위원회 동의 절차 없음)	○ → X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현재 2인의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 중 (주인기 사외이사, 신성환 사외이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2019년 감사위원회 설치 후 분기별 1회 이상 진행 중 (5월, 8월, 11월)	X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당사 감사 규정에 내부감사기구가 경영 관련 중요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이 피감사회사나 관계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 기준, ** 공시대상 기간 (2019. 01. 01. ~ 2019. 12. 31.) 기준